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조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정조달국 조달데이터 관리팀에 데이터 관련 제도운영, 품질관리 및 시스템 관리·운영을 위한 분장사무를 추가하고,

조달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인 인천지방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를 신설기구 평가결과에 따라 전문성 강화와 행정수요 확대를 공공조달길잡이 교육 및 다수공급자계약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한편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8. 00. ~ 08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8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유관”을 “조달통계 관련 유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조달데이터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

8.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

9. 조달데이터허브시스템 및 고객관리시스템(CRM)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제11조제5항제4호가목 중 “관할구역”을 “수도권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을 바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공공조달길잡이 교육과 관련된 사항

마. 관할구역 내 인천지방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계약 및 관리

별표 8의 인천지방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5년 9월 30일”을 “2026년 9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공정조달국) ① ~ ⑦ (생략)	제5조(공정조달국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조달데이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⑧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2. 조달데이터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</u>
2. <u>유관</u> 시스템 간 조달데이터의 연계·검증 및 활용	<u>3. 조달통계 관련 유관</u> ----- --
3. ~ 6. (생략)	4. ~ 7. (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
<u><신 설></u>	8. <u>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</u>
<u><신 설></u>	9. <u>조달데이터허브시스템 및 고객관리시스템(CRM)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</u>
⑨ (생략)	⑨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지방조달청) ① ~ ④ (생략)	제11조(지방조달청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인천지방조달청의 각 과 또는 센터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.	⑤ ----- ----- 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경기조달지원센터	4. -----

가. <u>관할구역</u> 내 조달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나.·다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라. (생략) ⑥ ~ ⑧ (생략)	가. <u>수도권</u> ----- ----- 나.·다. (현행과 같음) 라. <u>공공조달길잡이</u> 교육과 <u>관련된 사항</u> 마. <u>관할구역 내 인천지방조 달청장이 지정하는 다수공 급자계약 물품 계약 및 관 리</u> 바. (현행 라목과 같음) ⑥ ~ ⑧ (현행과 같음)
---	--

[별표 8]

조달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15조 관련)

조직	정원	평가기간	
		(현행)	(개정안)
인천지방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	2명 (6급 1명, 7급 1명)	<u>2025년 9월 30</u> 일까지	<u>2026년 9월 30</u> 일까지